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

발의연월일: 2024. 5. 30.

발 의 자:김정재・이상휘・이달희

박대출 · 김기현 · 박덕흠

윤한홍 · 서일준 · 김성원

박충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의료법」에서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과, 간호학과 등을 졸업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, 간호사 등 의료인이 될수 있다고 하고 있고, 「고등교육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의학과, 간호학과 등은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한 후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 개시 전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의학과, 간호학과 등의 신규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었음.

이에 대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학 등의 교육과정을 개 시하려는 대학은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운영 개시 예정 일 1년 3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하도록 「고등교육기관의 평가·인증 등에 관한 규정」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음.

하지만 상위법인 「의료법」과 「고등교육법」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도를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법 체계에 맞지 않 아 법령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3항, 제7조제2항).

참고사항

이 법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1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 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 임. 법률 제 호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"인증"을 "인증 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2제2항후단에 따른 평가인증기구의 예비인증(이하 "평가인증기구의 예비인증"이라 한다)"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"인증"을 "인증 또는 평가인증기구의 예비인증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	제5조(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
면허) ①・② (생 략)	면허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	③
당시 평가인증기구의 <u>인증</u> 을	<u>인</u> 증 또는
받은 의학・치의학 또는 한의	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2제2항
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	후단에 따른 평가인증기구의 예
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	비인증(이하 "평가인증기구의
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	예비인증"이라 한다)
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	
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	
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.	
제7조(간호사 면허) ① (생 략)	제7조(간호사 면허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	②
당시 평가인증기구의 <u>인증</u> 을	<u>인증 또는</u>
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	평가인증기구의 예비인증
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	
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	
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	
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	
하는 사람으로 본다.	